

## 【 7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3. 5.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 개정이유

- IMF 체제하에서 침체된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종전에는 0.3~7%까지 6단계로 적용하던 것을 재산세 최저세율인 0.3%로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코자 함.

### □ 주요골자

- 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안 제10조의 2)

양주군조례 제 호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신 설>	<p>제10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된 주택 건설 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p>

## 第2節 地方稅

## ●地方稅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制定	1961·12·8	法律第827號
改正	1962·12·29	法律第1243號
	1963·12·14	法律第1514號
	1966·8·3	法律第1803號
	1967·10·28	法律第1958號
	1967·11·29	法律第1977號
	1970·1·1	法律第2149號
	1973·3·12	법률제2593호
	1974·12·27	法律第2743號
	1976·12·31	法律第2945號
	1976·12·31	法律第2950號(國有財產法)
	1978·12·6	法律第3154號
	1979·4·16	法律第3160號
	1979·12·28	法律第3174號
	1981·1·29	法律第3357號(鑛業法)
	1981·12·31	法律第3488號
	1982·11·29	法律第3572號(韓國觀光公社法)
	1984·8·8	法律第3752號(産業研究院法)
	1984·12·15	法律第3754號(行政訴訟法)
	1984·12·24	法律第3757號
	1986·12·31	法律第3878號
	1986·12·31	法律第3910號(觀光振興法)
	1986·12·31	法律第3912號(自動車管理法)
	1988·4·6	法律第4007號
	1988·12·26	法律第4028號
	1988·12·31	法律第4064號(韓國담배人蔘公社法)
	1988·12·31	法律第4066號(人蔘協同組合法)
	1988·12·31	法律第4069號(保險業法)
	1988·12·31	法律第4073號(國家有功者等團體設立에 관한法律)
	1989·6·16	法律第4128號
	1990·1·13	法律第4212號(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
	1990·1·13	法律第4216號(産業立地및開發에 관한法律)
	1990·4·7	法律第4225號
	1990·4·7	法律第4228號(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1990·12·31	法律第4269號
	1991·1·14	法律第4332號(韓國産業人力管理公團法)
	1991·12·14	法律第4415號
	1993·6·11	法律第4561號(建設機械管理法)
	1993·12·27	法律第4611號
	1993·12·27	法律第4655號(韓國資源再生公社法)
	1994·1·7	法律第4720號(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
	1994·12·22	法律第4794號
	1994·12·31	法律第4856號(獨立有功者禮遇에 관한法律)
	1995·1·5	法律第4927號(交通安全振興公團法)
	1995·8·4	法律第4960號
	1995·12·6	法律第4995號
	1995·12·29	法律第5091號(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
	1995·12·29	法律第5109號(韓國土地公社法)
	1997·1·13	法律第5291號(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1997·8·30	法律第5406號
	1997·12·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 변경에 따른 建築法등의 整備에 관한法律)
	1997·12·24	法律第5474號(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1997·12·24	法律第5476號(韓國産業人力公團法)

## 第1章 總則

④市·郡稅(廣域市の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普通稅

- 가. 住民稅
- 나. 財産稅
- 다. 自動車稅
- 라. 農地稅
- 마. 담배消費稅
- 바. 屠畜稅
- 사. 綜合土地稅

2. 目的稅

- 가. 都市計劃稅
- 나. 事業所稅

[全文改正 95·12·6]

第6條의2 前條 <95·12·6>

第7條 (公益等事由로因한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 ①地方自治團體는公益上其他의事由로因하여課稅를不適當하다고認定할때에는課稅하지아니할수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公益上其他의事由로因하여必要한때에는不均一課稅를할수있다

第8條 (受益等事由로因한不均一課稅및一部課稅) 地方自治團體는그의一部에對하여特히利益이있다고認定되는事件에對하여서는不均一課稅를하거나또는그의一部에對하여서만課稅할수있다

第9條 (課稅免除等을爲한條例) 第7條및第8條의規定에依하여地方自治團體가課稅免除·不均一課稅또는一部課稅를하고자할때에는內務部長官의許可를얻어當該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써定하여야한다 <改正 78·12·6>

第9條의2 (天災등으로 인한 減免)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天災·地變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地方稅의 減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場合에 對하여는 當해 地方自治團體 議會의 議決을 얻어 地方稅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5·12·6>

[本條新設 94·12·22]

第10條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意見이 相馳되는 境遇의 措置)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課稅權의 歸屬其他이 法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他地方自治團體의 長과 意見을 달리하여 協議되지 아니할 境遇에는 道內에 關한것은 道知事, 數道에 걸쳐있는것에 關하여는 內務部長官에게 그에 關한 決定을 請求하여야한다. <改正 67·11·29>

②道知事 또는 內務部長官이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부터 第1項의 決定의 請求를 受理할때에는 그 請求를 受理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이를 決定하여 遲滯없이 그 뜻을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通知하여야한다 <改正 81·12·31>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道知事의 決定에 不服이 있는 市長 또는 郡守는 그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日以內에 內務部長官에게 審査를 請求할수있다 <改正 78·12·6>

第2款 課稅標準 및 稅率

第187條 (課稅標準)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73·3·12, 90·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은 第111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時價標準額으로 한다. <改正 76·12·31 法2945, 95·12·6>

第187條의2 삭제 <73·3·12>

제188조 (稅率) ① 財産稅의 標準稅率은 다음 各號의 定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86·12·31 法3878, 89·6·16, 90·12·31, 93·6·11, 94·12·22, 97·8·30>

1. 削除 <89·6·16>

2. 建築物

(1) 住宅: 住宅에 대한 財産稅의 稅額은 課稅標準에 다음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課稅標準>

<稅率>

1,200萬원이하

1,000分の 3

1,200萬원초과

3萬6千원 + 1,200萬원 초과金額의 1,000分の 5

1,600萬원이하

1,600萬원초과

5萬6千원 + 1,600萬원 초과金額의 1,000分の 10

2,200萬원이하

2,200萬원초과

11萬6千원 + 2,200萬원 초과金額의 1,000分の 30

3,000萬원이하

3,000萬원초과

35萬6千원 + 3,000萬원 초과金額의 1,000分の 50

4,000萬원이하

4,000萬원초과

85萬6千원 + 4,000萬원 초과金額의 1,000分の 70

(2) 골프場·別莊·高級娛樂場用 建築物: 그 價額의 1,000分の 50

(3)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都市내에서 都市計劃法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住居地域 및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地域내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工場用 建築物: 그 價額의 1,000分の 6

(4) 第1目 내지 第3目 이외의 建築物: 그 價額의 1,000分の 3

3. 船舶

(1) 高級船舶: 그 價額의 1,000分の 50

(2) 第1目 이외의 船舶: 그 價額의 1,000分の 3

4. 削除 <94·12·22>

5. 航空機: 그 價額의 1,000分の 3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增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課稅基準日로부터 5년간 第1項第2號 第4目에 規定한 稅率의 100分の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改正 76·12·31 法2945. 86·12·31 法3878. 89·6·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범위의 적용기준은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6>

⑤同一한 財産에 대하여 2이상의 稅率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稅率을 適用한다. <新設 76·12·31 法2945>

⑥市長·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産稅의 稅率을 第1項의 標準稅率의 100分の 50의 범위안에서 加減調整할 수 있다. <新設 97·8·30>  
(전문개정 73·3·12)

第3款 賦課徵收

第189條 (課稅基準日 및 納期) 財産稅의 課稅基準日은 매년 5月 1日로 하고, 納期는 매년 6月 16日부터 6月 30日까지로 한다.  
(全文改正 89·6·16)

第190條 (徵收方法等) ①財産稅의 徵收는 普通徵收方法에 依한다.

②財産稅를 徵收하고자 하는 때에는 納稅告知書에 建築物·船舶 또는 航空機 등으로 區分하여 各個別 當該 課稅標準, 稅額과 그 合計稅額을 記載하여 늦어도 納期開始 5日前까지 發付하여야 한다. <개정 73·3·12, 74·12·27, 76·12·31 法 2945, 84·12·24, 89·6·16, 90·12·31, 93·6·11, 94·12·22>

第191條 (少額不徵收) 財産稅의 稅額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財産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0·12·31)

第192條 (申告義務) ①財産稅의 納稅義務者는 條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納稅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그 財産의 所有者를 納稅義務者로 하여 課稅臺帳에 登載할 수 있다. <新設 63·12·14, 78·12·6>

第193條 (賣却, 登記, 登錄關係書類의 閱覽等) 稅務公務員이 財産稅의 賦課, 徵收에 關하여 財産稅課稅對象財産의 賣却, 등기·등록 기타 재산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를 閱覽하거나 謄寫할 것을 請求한 境遇에는 關係機關은 이에 應하여야 한다. <개정 73·3·12>

- 5. 別定郵便局이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사용하는 土地
-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道路·河川·堤防·溝渠·溜池·史蹟地 및 墓地
- 7. 保安林 기타 公益上 綜合土地稅를 賦課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土地

(本條新設 89·6·16)

第234條의13 및 第234條의14 削除 <94·12·22>

第2款 課稅標準 및 稅率

第234條의15 (課稅標準) ①綜合土地稅의 課稅標準은 綜合合算課稅標準·別途合算課稅標準 및 分離課稅標準으로 구분한다.

②綜合合算課稅標準은 課稅基準日 현재 納稅義務者가 所有하고 있는 全國의 모든 土地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建築物의 附屬土地를 제외한 土地의 價額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土地의 價額은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改正 94·12·22, 95·12·5, 98·12·31>

- 1. 이 法 또는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土地稅가 非課稅 또는 免除되는 土地의 價額
- 2.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土地稅가 輕減되는 土地의 輕減比率에 해당하는 土地價額
- 3.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工場用地·田·畓·果樹園 및 牧場用地의 價額
- 4. 山林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林野 및 宗中所有 林野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林野의 價額
- 5. 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골프場(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用 土地의 價額과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別莊·高級娛樂場用 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의 價額 및 第188條第1項第2號(1)의 規定에 의한 住宅의 附屬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土地의 價額
- 6. 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와 유사한 土地 및 綜合土地稅를 分離課稅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土地의 價額

③別途合算課稅標準은 課稅基準日 현재 納稅義務者가 所有하고 있는 全國의 모든 建築物의 附屬土地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建築物의 附屬土地의 價額을 合算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價額은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④分離課稅標準은 第2項第3號 내지 第6號의 價額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제정	1970·4·3	대통령령	제4840호	
개정	1973·5·5	대통령령	제6667호	
	1974·12·28	대통령령	제7454호	
	19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	
	1975·12·31	대통령령	제7903호	
	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1977·9·20	대통령령	제8697호	
	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1979·4·27	대통령령	제9439호	
	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1987·7·1	대통령령	제12208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987·7·1	대통령령	제12212호	(관광진흥법시행령)
	1987·11·24	대통령령	제12273호	
	1988·5·7	대통령령	제12447호	
	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	
	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	(의료법시행령)
	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0호	
	1991·4·8	대통령령	제13342호	(도서관진흥법시행령)
	1991·5·23	대통령령	제13372호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	
	1992·6·11	대통령령	제13660호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5·26	대통령령	제13689호	(연지니어랑기술진흥법시행령)
	1993·6·29	대통령령	제13919호	
	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1994·4·30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1994·5·30	대통령령	제14276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1994·7·23	대통령령	제14339호	(도서관및도서진흥법시행령)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	
	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	
	1996·2·15	대통령령	제14915호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1996·4·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6·29	대통령령	제15096호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996·11·6	대통령령	제15166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	
	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1998·6·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 (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

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 2 조제 2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12호·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본조신설 89·8·24)

**제 194조의 15 (분리과세 대상토지)** ①법 제234조의15제 2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0·6·29, 91·5·23, 91·12·31, 93·12·31 대령14041, 94·12·31, 95·8·21, 95·12·30, 96·4·27, 96·12·31, 97·10·1, 98·7·16>

1. 공장용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다.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84조의4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 및 건물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②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0·6·29. 91·5·23. 93·12·31 대통령14041. 94·12·31. 95·12·30. 96·4·27. 97·10·1>

-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 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울 포함한다)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및 통제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
  -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
  -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전인접지역안의 임야
  -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임야
  - 사. 하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양구역으로 표시된 지역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

③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광포성·별장 기타 사치성 객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

한다. <개정 90·6·29, 94·12·31, 95·8·21, 98·7·16>

1.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안의 모든 토지
2.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의 부속토지
3.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중 993제곱미터(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
4.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④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5·23, 93·12·31 대령14041, 94·12·31, 95·12·30, 96·2·15, 96·6·29, 96·12·31, 97·10·1, 98·7·16>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3. 과세가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서5호에서 규정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추 98)

- 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의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
  13.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및 업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양주군군세감면조례

[1997. 12. 31]  
[조례 제1660호]

개정 1998. 4. 30 조례 제1672호

개정 1998. 10. 14 조례 제1679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 2 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 4 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약정비계획에 따

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도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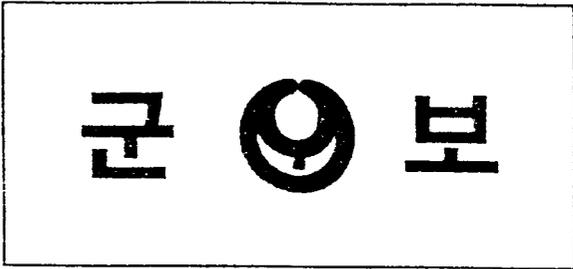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1조의2(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

#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i>이재구</i>

제 121 호  
1999년 1월 25일 (월)

## 차 례

###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 제1999-13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 ..... 2

### 고 시

양주군고시 제1999-5호 백석도시계획시설~~결정~~ 결정고시 ..... 3

회	<i>이재구</i>	<i>김영진</i>	<i>김영진</i>	<i>김영진</i>	<i>김영진</i>			
람	<i>이재구</i>	<i>김영진</i>	<i>김영진</i>	<i>김영진</i>	<i>김영진</i>			

발행 : 양주군

편집 : 문화공보실

양 주 군 보

제 121 호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1999-13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1월 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군세감면조례의 관리·운영상 불부합한 해당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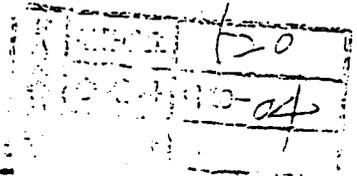
영 제194조의15제4항제8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때까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0.3%)의 예외를 인정. 또한 영업용건물등 기타 사업자가 소유하는 건물은 모두 0.3%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최저세율(0.3%)이 적용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기 위함.(안 제10조의 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2182·218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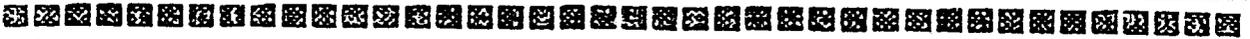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문서요령 20% 줄이기"



# 경 기 도

우)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 / ☎(0331) 249-2311 / FAX(0331)249-2319  
세정과 / 과장 최원택 / 담당자 서정덕



문서번호 세정 13400 - 72  
시행일자 1999. 1. 9. (5년)  
(경유)  
발 을 수신처 참조  
참 조

선	집	6/1/99	지	시	
점	일자	1999. 1. 9	결	재	
수	번호	469 (47)	공	관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공보

1.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34('98. 12. 30)호의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감면조례상의 해당조항을 그에 부합되도록 개정 하고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에서 허가된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 이 공보하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세감면조례정비(개정)계획 1부. 끝.

# 경 기 도 지



수신처 : 세정(세무, 부과, 징수, 재무)과장

## 地方稅減免條例 整備(改正) 計劃

- 지방세법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로 이에 부합되도록 조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고
-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관리·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를 정비·보완코자 함

### I. 減免條例 整備(改正)의 必要性

- 지방세법 및 조감법의 개편
  - '98년말에 지방세법령의 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위 법령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감면조례 정비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 정비
- 감면조례의 관리·운영상의 투명성 제고
  - 감면조례 규정이 해석상 불분명하여 민원을 유발시키거나
  - 자치단체에서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여
  - 민원소지 해소 및 신뢰세정 구현

## II. 減免現況

□ 비과세 감면 총규모('97) : 1조 8,039억원(징수총액 18조 4,057억원의 9.8%)

-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 ..... 9,307억원(51.6%)
- 조례상 감면 ..... 8,468억원(46.9%)
- 조세감면규제법등 감면 ..... 264억원( 1.5%)

※ 조례상 감면 ..... 74종(8,468억원)

- 전국공통조례상 감면 ..... 37종
  - 국가유공자등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7종
  -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2종
  - 주차장등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 4종
  - 공동주택등 서민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감면..... 5종
  - 농어촌주택개량등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 ..... 2종
  - 지방공사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감면 ..... 17종
- 특정자치단체의 지역발전지원을 위한 감면 ..... 37종

### □ 지방세 비과세·감면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별 구분	'94	'95	'96	'97
감면총규모 (전년대비증감율)	15,206 (-)	14,890 (△2%)	15,508 (4.2%)	18,039 (16.3%)
<u>조례감면규모</u> (전년대비증감율)	7,768 (-)	6,854 (△11.7)	8,121 (18.5)	<u>8,468</u> (4.3)

※ 위 통계는 각년도 지방세정연감 자료임

### Ⅲ. 減免條例 整備(改正)計劃

#### <폐지조례>

##### (1) 1가구당 1대초과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 지방세법상의 1가구 2차량이상 소유에 대한 증과제도 폐지르

⇒ 조례 제13조의2의규정 존치 불필요 삭제

#### <제정 및 개정조례>

##### (1)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 현재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 경감(조례) : 취득세 면제, 등록세 1%

- 이와유사한 수출용 중고자동차 및 중고기계장비를 취득 하는 경우 감면 필요성 대두(대한상공회의소 건의)

⇒ 수출용중고자동차 및 중고기계장비 등에 취득세를 면제 하는 조문신설

※ 수출용 중고자동차는 등록말스 상태에서 수출하므로 등록세 경감은 필요치 아니함

##### (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 : 6단계 (0.3~7%)누진세율(법 제188조) 적용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0.3%) 예외인정

- 영 제194조의15제4항제3호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저세율(0.3%) 적용 조문신설

※ 영업용건물등 기타 사업자가 소유하는 건물은 모두 0.3%로 누진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3) 지방소재 주택의 “별장”증과규정 한시적 배제

○ 제주도에 한하여, 공동주택용 부동산 등이 별장에 해당되더라도 조례에 의거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증과배제 하고있으나

※ 감면율 : 증과세율 → 일반세율

취득세 : 15%→2%, 종합토지세 : 5%→종합합산세율(0.2%~5%)

재산세 : 5%→주거용 누진세율(0.3%~7%)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타지역의 경우도 지방 소재 주택 구입시 한시적으로 증과세율 적용 배제 조치필요(재정경제부건의)

⇒ 제주도 이외의 지역도 시도의 허가요구시 수용

### (4) “호주승계예정자”의 범위 개선

○ 현재 소규모주택 감면대상은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3항

- 부친사망으로 이의 「호주승계를 받은자」가 60세이상의 모친을 부양하는 경우(모친이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이를 “호주승계예정자(호주승계자를 포함한다)”로 보완필요

⇒ 관련조문 개정 보완

### (3) 지방소재 주택의 “별장”증과규정 한시적 배제

○ 제주도에 한하여, 공동주택용 부동산 등이 별장에 해당되더라도 조례에 의거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증과배제 하고있으나

※ 감면율 : 증과세율 → 일반세율

취득세 : 15%→2%, 종합토지세 : 5%→종합합산세율(0.2%~5%)

재산세 : 5%→주거용 누진세율(0.3%~7%)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타지역의 경우도 지방 소재 주택 구입시 한시적으로 증과세율 적용 배제 조치필요(재정경제부건의)

⇒ 제주도 이외의 지역도 시도의 허가요구시 수용

### (4) “호주승계예정자”의 범위 개선

○ 현재 소규모주택 감면대상은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3항

- 부친사망으로 이미 「호주승계를 받은자」가 60세이상의 모친을 부양하는 경우(모친이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이를 “호주승계예정자(호주승계자를 포함한다)”로 보완필요

⇒ 관련조문 개정 보완

(5)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설정

○ 소도읍 가꾸기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도세감면조례 제20조 제3항)

-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적용상 혼란초래

⇒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수용시 초과액 산정기준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보완

##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등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소재 주택에 대하여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상증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등과 같이 주택경기 부양 필요성이 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도에서 허가요청시 수용 방침임

### 신구조문대비표

#### <시·군조례>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제〇〇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된 주택 건설 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p>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부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IF체제하에서 침체된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종전에는 0.3~7%까지 6단계로 적용하던 것을 재산세 최저세율인 0.3%로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코자 함.

주요내용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안 제10조의 2).

개정조례안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지방세법 제9조

○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99.1.25~99.2.13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없음.

기타참고사항 : “별 첨”

○ 양주군군세감면조례

○ 자치법규입법예고 기안문 및 군보사본 1부

○ 경기도 지방세감면조례 준칙안 1부